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하목록 제출 자료는 보세화물관리가 시작되고 종결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 이를 담당하는 선사·포워더의 실무자는 관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이 책은 적하목록 업무를 처음 접하는 선사 및 포워더의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제 I 부〉『적하목록 Q&A』, 〈제II 부〉『적하목록 바로알기』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제 I 부〉 『적하목록 Q&A』는 최근 3년간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544-1285)에 접수된 적하목록 관련 주요 문의사항을 분석하여 주제별 Q&A 형태로 묶어내었으며.

〈제Ⅱ부〉 『적하목록 바로알기』는 주요 용어와 수출입·환적화물 처리절차 등 실무자가 알아야 할 핵심업무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 이 책자는 부산세관 홈페이지 『정보공개》적하목록길라잡이』에서도 확인가능하며, 관련 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상화물 적하목록 길라잡이**

제 I 부 적하목록 Q&A	
◈ 전체 질의 목록 7~12	
1. 적하목록 일반13	
2. 적하목록 정정15	
3. 하선신고	
4. 관리대상화물	
5. 입항전보세운송신고23	
6. BL분할 합병 및 비가공증명서24	
7. 전산신고 및 오류통보26	
제 II 부 적하목록 바로알기	
1. 용어 37	
2. 영업등록41	
3. 입항화물	
4. 출항화물 59	
5. 환적화물64	
6. 벌칙	



제 I 부 적하목록 Q&A

◈ 전체 질의 목록 7 ²	-12
1. 적하목록 일반	13
2. 적하목록 정정	1!
3. 하선신고	20
4. 관리대상화물	22
5. 입항전보세운송신고	23
6. BL분할 합병 및 비가공증명서	24
7. 전산신고 및 오류통보	26

Ⅰ. 적하목록 일반

문의사항	페이지
1. 적하목록이 무엇인가요?	13
2.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누구인가요?	13
3.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는 누구인가요?	13
4. 적하목록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13
5. 화물관리번호란 무엇인가요?	13
6. BL타입(S, C, E)은 무엇인가요?	14
7. 화물구분 (I, E, T, R)은 무엇인가요?	14
8. 환적화물은 출항적하목록에 어떻게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14
9. 관세청 유니패스를 이용하여 적하목록 제출이나 정정신청이 가능한가요?	14
10. 적하목록 작성 시 특수화물코드는 위험물만 기재하나요?	14
11. 수입화물진행정보에 항내 정박장소 이동신고는 무엇인가요?	14
12. 입항보고 제출이 먼저인가요? 입항적하목록 제출이 먼저인가요?	14
13. 수입화물진행정보에 중량은 어떻게 표시되나요?	15
14. 해상 적하목록제출 시 특송화물로 제출이 가능한가요?	15
15. House BL번호는 최대 몇 자리까지 표기할 수 있나요?	15
16. BL 1건이 여러 항차로 분할 반입될 경우 동일 BL번호를 중복 사용하여 적하 목록을 제출할 수 있나요?	15
17. 까르네 수출신고 건도 적하목록 제출대상인가요?	15
18. 적하목록 제출 이후 심사가 언제 완료될지 알 수 있을까요?	15

Ⅱ. 적하목록 정정

문의사항	페이지
1. 적하목록 정정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15
2. 적하목록정정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15
3. 적하목록정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6
4. 적하목록정정 신청을 했는데 접수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16
5. 적하목록 정정신청이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16
6. 정정신청 후 서류심사 대상으로 통보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16
7. 적하목록정정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17
8. 적하목록정정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무엇이 있나요?	17

문의사항	페이지
9. 과태료 부과대상 중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는 어떤 경우인가요?	17
10. 과태료 부과대상 중 정정신청 기한 경과는 어떤 경우인가요?	17
11. 적하목록상 화물구분(수입, 환적)을 정정하고 싶습니다.	18
12. 적하목록 제출 이후 공휴일에 하선전 긴급 양하 건이 있어 BL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8
13. 적하목록 수하인의 사업자번호 정정은 가능한가요?	18
14. 입항적하목록의 중량 정정 시 Master BL과 House BL중 어느 BL을 먼저 정정해야 하나요?	18
15. 적하목록 중량이 잘못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입이상보고를 하였습니다. 적하 목록을 정정해야 하나요?	18
16. 부산세관에 입항적하목록을 제출하면서 인천세관 관할 보세구역을 장치예정 장소에 기재하였습니다. 정정해야 하나요?	18
17. 수출이행내역 조회 시 보여지는 출항일자와 실제 출항일자가 다르다고 합니다. 정정이 가능한가요?	19
18. 출항적하목록이 최종마감 되었는데 승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19
19. 출항적하목록 1차 마감 후 선박이 변경되어 취하해야 합니다.	19
20. 출항적하목록 BL타입 변경을 위해 Master BL을 삭제할 경우 House BL은 어떻게 삭제하나요?	19
21. 출항적하목록의 수출신고번호가 바뀌어서(Cross) 잘못 제출되었습니다.	19
22. 출항적하목록의 UCR번호가 무엇인가요?	19
23. 출항적하목록 취하 후 동일 MRN사용이 가능한가요?	19
24. 출항적하목록 최종 마감 이후 자동승인은 언제 되나요?	19
25. 분할선적 차수는 몇 차까지 가능한가요?	19
26. 출항적하목록 마감을 취소하면 어떤 상태로 변경되나요?	19
27. 수출신고 2건, BL 2건으로 동시포장 신고가 가능한가요?	20
28. '17년도 MRN으로 출항적하목록 제출하고 18년도 MRN으로 출항보고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20
29. 환적화물은 입항 후 며칠 이내에 출항해야 하나요?	20
30. 환적화물의 경우 입항적하목록이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적하목록 제출이 가능한가요?	20
31. 입항 시 BL타입을 'S'로 제출한 환적화물을 출항 시 BL타입을 'C'로 제출할수 있나요?	20
32. 수출신고번호가 없는 화물은 출항적하목록 제출 시 어떻게 하나요?	20
33. 어느 포워더가 수출신고번호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20

Ⅲ. 하선신고

문의사항	페이지
1. 해상수입화물을 하선할 수 있는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20
2. 하선신고는 누가 하나요?	21
3. 하선신고 후 하선장소를 정정 하고 싶습니다.	21
4. 포워더도 하선장소를 정정할 수 있나요?	21
5. 적하목록 장치예정장소(=배정장소)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21
6. 즉시검사 대상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었습니다. 하선신고한 하선장소로로 반입하면 되나요?	21
7. 검색기검사 대상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었습니다. 하선신고한 하선장소로로 반입하면 되나요?	21
8. 하선장소 반입기간 중간에 공휴일이 있으면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21
9. 수입화물진행정보에 하선신고 정정승인(삭제)으로 보여집니다.	22
10. 어느 시점부터부터 하선장소·하역장소은 정정할 수 있나요?	22
11. 하선신고를 하였으나 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22
12. 하선신고수리 후 적하목록 BL번호를 정정하였습니다. 입항반입 신고 때도 BL번호를 정정해야 하나요?	22
13. 수입선박을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받아 통관하는 경우 하선신고(하선코드: GD)를 어떻게 하나요?	22
14. 하선신고 수리 후 Master BL을 추가한 경우 하선신고도 추가해야 하나요?	22

Ⅳ. 관리대상화물

문의사항	페이지
1. 수입화물진행정보에 관리대상화물 검사선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22
2. 수입화물진행정보에 관리대상화물 지정여부(Y)는 언제 해제되나요?	22
3. 수입화물진행정보에 투시해제는 어떤 상태인가요?	23
4. 환적화물로 신고하였는데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었습니다.	23
5.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나요?	23
6. 관리대상화물은 컨테이너 단위로 지정하나요.	23
7. 관리대상화물 검사결과 등록은 완료되었으나 보세운송신고가 안됩니다.	23
8.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어 검색기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용이 발생하나요?	23

V. 입항전보세운송신고

문의사항	페이지
1. 하선신고 수리된 상태로 입항전보세운송이 가능한가요?	23
2. 1Master, 복수 House건으로 일부 House건만 입항전보세운송이 가능한가요?	23
3. 입항전보세운송건의 하선신고를 「IT+03046000」로 할 수 있나요?	23
4. 입항전보세운송신고 시 출발지를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24

VI. BL분할 합병 및 비가공증명서

문의사항	페이지
1. BL분할(화물관리번호분할)이란 무엇인가요?	24
2. 수입물품을 양도하게 되어 BL분할을 신청할 때 수하인을 다른 사람으로	24
변경할 수 있나요?	24
3. 현재 선박이 입항하여 하역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 보세창고에 미반입	24
상태이나 긴급하여 BL분할로 통관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4
4. BL분할을 했는데 중량, 수량이 잘못 되어있습니다.	24
5. Master BL건을 BL분할 하였는데 최초 화물관리번호 물품이 보세운송신고가	25
안됩니다.	25
6. 1개 Master BL에 1개 House BL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House BL 일부가	
화주가 바뀌어 BL을 분할하려고 합니다. BL분할이 가능한지? BL분할이 안	25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수입신고한 물품 중 일부가 통관보류되어 BL분할로 통관 하려고 합니다.	
통관보류된 물품(반송예정)의 납부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도 BL분할이	25
가능한가요?	
8. 비가공증명서의 발급 요건과 신청 자격을 알고 싶습니다.	25
9. 환적화물 비가공증명서 신청 시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25
10. BWT화물도 비가공증명서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26

Ⅷ. 전산신고 및 오류통보

문의사항	페이지
1. 수출신고한 공컨테이너의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하니 선적 건이라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26
2. 하선결과이상보고 전송시「상이내역부호가 CND(컨테이너번호가 다름)이면 이미 반입된 컨테이너번호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26

문의사항	페이지
3. 환적화물로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하니 환적화물이 아니라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26
4. 하선신고 시「하역회사부호를 바르게 입력하십시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26
5. 하선신고 시 「입항전 수입신고 반입예정지와 하선장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27
6. 하선신고 시「하선물품구분이 ID,IT가 아닌 경우 보세구역외장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27
7. 하선신고 시「보세운송 출발지와 하선장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27
8. 하선기간 연장 신청 시「담당세관/과 아니므로 수신된 전자문서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27
9. 관리대상지정여부:Y[검사완료-적하목록기재오류]로 확인되었습니다.	27
10. 수입화물진행정보 인쇄시 「에러코드:1020030013보고서를 로딩하면서 예외가 발생하였습니다」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27
11. 입항적하목록 부분 재전송 후 「해당건은 이미 보완 마감 되었습니다」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27
12. 적하목록 전송 시「사용정지된 화물주선업자부호입니다. 세관에 부호를 확인 하십시오」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28
13. 적하목록 전송 시「M BL 반입예정장소를 확인하십시오」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28
14. 입항적하목록 접수 전송 후 「본세관, 과는 적하목록문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세관, 과를 확인하십시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28
15. 적하목록 정정신청한 건이 세관에서 조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8
16. 적하목록 정정신청 시「정정전 내역(품명)이 적하목록과 상이합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28
17. 적하목록 정정신청 시「입항보고 제출건이므로 입항보고를 확인하십시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28
18. 적하목록 정정신청 시「수입전 물품반출신고수리된 건으로 적하목록 정정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28
19. 적하목록 정정신청 시「해당 MRN은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적하목록 정정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28
20. 적하목록 정정신청 시「이미 접수된 제출번호입니다. 새로운 제출번호를 사용 하십시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29
21. 출항적하목록 정정신청 시「House BL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정, 삭제할 수출신고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29
22. 인천세관(040)에 제출하여야 할 적하목록을 부산세관(030)으로 잘못 제출하였습니다.	29

문의사항	페이지
23. 적하목록을 제출했는데 이번 항차로 입항/출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적하목록을 취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9
24.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했는데 처리상태가 '기각'입니다.	29
25. 적하목록 정정신청 후 기각되어 다시 정정신청을 하는데 「기 심사된 자료입니다」 라고 오류메시지가 뜹니다.	29
26. 적하목록 정정내역을 실수로 잘못 전송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0
27. House BL 추가 신청을 전송했더니 기각되었습니다. 기각 사유가 「선사 BL타입을 확인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
28. 한 BL에 여러 대의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 중 일부만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었습니다. 하선장소가 지정장치장으로 되었는데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지 않은 컨테이너도 지정장치장으로 반입해야 하나요?	30
29. 1개의 Master BL에 1개의 House BL로 신고를 했는데 화주가 BL을 나눠서 진행하고 싶다고 합니다.	30
30.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전송했는데 체화된 물품이라고 전산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30
31. 부두직통관으로 수입신고수리후 물품을 반출하였습니다. 실제로 창고에서 개장을 해보니 수입신고 내역과 물건의 중량·수량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적하목록정정이 가능한가요?	31
32. 입항반입 후 House BL을 추기하려고 하는데 Master BL타입이 SIMPLE입니다. BI타입을 CONSOL로 변경 시 반입관련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31
33. 출항적하목록 제출 시 오류메시지를 통보받았습니다.	31
34. 출항적하목록 제출 시「이미 선적된 수출신고내역입니다」라는 오류메시지가 확인되었습니다.	31
35. 적하목록제출을 했는데 수출이행내역에는 'N'으로 되어 있습니다.	31
36. 수출신고내역과 중량·수량 불일치로 수출이행내역에는 'N'으로 표기되어 있어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았는데 여전히 수출이행내역이 'N'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31
37. BL상 중량·수량이 정정되어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기각 사유는 '선적 포장개수 합은 통관 포장개수 합보다 클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2
38. House BL추가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기각 사유는 「House BL의 포장개수 합은 Master BL의 총 포장개수 합보다 클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32
39. 출항적하목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수리일자가 출항일자 이후 건입니다」 오류메시지를 받았습니다.	32
40. 출항적하목록 BL번호는 어떻게 정정하나요?	32
41. 수출신고가 2건으로 수리됐는데 그 중 일부를 동시포장 하였습니다. 적하목록 제출 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32
42. 분할선적 시 수출신고 사항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33

1. 적하목록 일반

O1. 적하목록이 무엇인가요?

A. 적하목록 기재요령에 따라 선사가 Master BL의 내역을 기재한 선박의 화물 적재목록 을 말합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가 House BL의 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혼재화물적 하목록 이라고 합니다.

O2.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누구인가요?

A. 적하목록제출의무자는 작성된 적하목록을 취합하여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제출하 여야 할 자로 외국무역선을 운항하는 선박회사(해운대리점을 포함)를 말합니다.

03.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는 누구인가요?

- A. 적하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실제 작성한 자(가~다)로. 통상 선하증권을 발행한 자의 국내 법인(본사,지사), 대리인(흔히 파트너)를 말합니다.
 - 가. 수출입물품을 집하·운송하는 운항선사
 - 나. 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선박을 용선한 선박회사(대리점을 포함)
 - 다. 혼재화물은 화물운송주선업자(대리점 포함)
- (예시) A상선 미국지사 발행 선하증권의 내역 → A상선 국내지사가 적하목록 작성. 미국의 B포 워더 발행 선하증권 내역 → 국내 파트너 C포워더가 적하목록 작성

O4. 적하목록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A. 입항적하목록과 출항적하목록의 제출시기가 구분됩니다.
 - 입항적하목록: 입항24시간전(원거리), 입항전(근거리)
 - 출항적하목록: 적재24시간전(원거리), 적재30분전(근거리), 출항익일(환적화물)

O5. 화물관리번호란 무엇인가요?

A. 화물관리번호는 적하목록 관리번호(MRN)에 Master BL일련번호(MSN), House BL 일련번호(HSN)을 합한 것입니다.

◇ 화물관리번호 : 적하목록 관리번호 + Master BL일련번호 + House Bl일련번호												
	MRN			MSN			HSN			계		
	18AE	BCDA1	231	0089			0001		1	5 or 1	9자리	
→ 적하목록 관리번호												
	1	8	Α	В	С	D	Α	1	2	3	I	
	제출연도 (숫자2)			선사부호(영문 4) 항공사부호(영문 2)			(번호 숫자 4	l)	입항(I) 출항(E)		

Q6. BL타입(S, C, E)은 무엇인가요?

A. 우선 'S'와 'C'는 House BL의 유무로 구분합니다.

'S'는 SIMPLE의 약자이며 Master BL만 있고 House BL이 없는 경우 'C'는 CONSOL의 약자이며 Master BL과 House BL이 있는 경우 'E'는 EMPTY의 약자이며 공컨테이너를 수출입하는 경우

07. 화물구분(I. E. T. R)은 무엇인가요?

A. 적하목록상 수입화물과 환적화물의 구분입니다.

'I'는 IMPORT의 약자로 수입화물
'E'는 EXPORT의 약자로 수출화물
'T'는 TRANSSHIPMENT의 약자로 입항하는 환적화물

'R'는 RESHIPMENT의 약자로 출항하는 환적화물

08. 환적화물은 출항적하목록에 어떻게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A. 환적화물은 수출신고번호가 없으므로 수출신고 관련번호에 입항 화물관리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적화물은 수입화물진행정보에서 입항 화물관리번호로 조회하면 출항적하목록 제출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적하목록 제출을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9. 관세청 유니패스를 이용하여 적하목록 제출이나 정정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적하목록 중계사업자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적하목록 제출이나 정정이 가능합니다. 단, 정정 첨부서류는 유니패스로 제출가능합니다.

Q10. 적하목록 작성 시 특수화물코드는 위험물만 기재하나요?

A. 위험물뿐만 아니라 검역대상물품과 보온(보냉)물품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Q11. 수입화물진행정보에 항내 정박장소 이동신고는 무엇인가요?

A. 예를 들면 부산항에 입항한 선박이 부산항내에서 다른 부두로 이동한다는 신고입니다. 적하목록 정정이나 화물이동과는 별개 사안입니다.

O12. 입항보고가 먼저인가요? 입항적하목록 제출이 먼저인가요?

A. 입항보고 시 입항적하목록을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항적하목록을 사전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입항보고와 적하목록 제출시기는 준수해야 합니다.

O13. 수입화물진행정보에 중량은 어떻게 표시되나요?

A. KG단위로 표시되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할 수 있습니다.

O14. 해상 적하목록 제출 시 특송화물로 제출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2019년 4월부터 해상화물 시스템이 개선되어 항공화물과 동일하게 특송화물(BL타입 X 또는 D)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015. House BL번호는 최대 몇자리까지 표기할 수 있나요?

A. 20자리까지 표기할 수 있습니다.

Q16. BL 1건이 여러 항차로 분할 반입될 경우 동일 B/L번호를 중복 사용하여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나요?

A. 입항적하목록은 BL번호가 아닌 화물관리번호로 관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O17. 까르네 수출신고 건도 적하목록 제출대상인가요?

A. 국외로 반출할 경우 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O18. 적하목록 제출 이후 심사가 언제 완료될지 알 수 있을까요?

A.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의 적하목록 심사는 부산세관 뿐 아니라 인청세관·평택세관 에서 함께 심사처리를 하고 있으며, 선박 입항시기와 화물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심사완료 시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

11. 적하목록 정정

Q1. 적하목록 정정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입항적하목록은 적하목록 심사완료 이후 출항적하목록은 적하목록 최종마감 이후 가능합니다. 입항적하목록의 경우 심사완료 이후인 경우에도 관리대상화물의 경우 검사완료 전, 보세운송물품의 경우 도착지 반입 전까지는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O2. 적하목록정정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적하목록 작성 책임자가 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세운송으로 보세구역에 반입 된 경우 수입화주(선사, 포워더, 관세사 등 위임을 받은 자 포함)가 그 보세구역을 관 할하는 세관장에게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03. 적하목록정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적하목록제출 전송 프로그램(유로지스허브, 프리즘3.0 등)으로 적하목록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는 방법은 중계사업자 프로그램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사용하시는 중계사업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정시 근거서류 등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유니패스를 통해 전산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04. 적하목록정정 신청을 했는데 접수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사용하시는 적하목록제출 전송 프로그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접수'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관 정정심사가 완료되면 '승인'이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항 건은 수입화물진행정보에 '입항적하목록 정정 승인신청 접수'라고 되어 있으면 정상 접수가 된 것이니 세관 처리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류통보나 아무런 메시지도 확인할 수 없다면 정상 접수되지 않은 것이니 확인 후 재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O5. 적하목록 정정신청이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세관은 적하목록 정정신청이 접수되면 '전산승인 / 기각 / 서류제출대상'으로 구분 하여 심사합니다.

일부 경미한 건이나 하선결과이상보고에 따른 정정 등은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수하인 정정, 품명 정정 등 정밀심사가 필요한 건은 서류제출로 변경하여 서류검토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산심사결과 기각 또는 서류심사 대상으로 변경 시 기각사유와 제출 서류(예: 정정 신청서, 사유서, BL, INVOICE, Shipper전문)를 기재하여 통보하오니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06. 정정신청 후 서류심사 대상으로 통보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세관에서 통보한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 후, 적하목록 정정신청서에 정정사항을 기재 하고 적하목록 정정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구비하여 세관 담당자 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본 제출서류는 정정신청서, 사유서, BL, INVOICE, PACKING LIST 이며, 정정 사안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를 기재하여 통보하오니 반드시 전산으로 세관통보 내역을 확인 후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07. 적하목록정정신청서 양식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 A. ① 관세청 유니패스 접속 (http://unipass.customs.go.kr) → 고객지원 → 자료실 → 일반자료실 → 13번 게시물
 - ② 관세법령정보센터 접속(http://unipass.customs.go.kt/clip) → '보세화물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검색 → 행정규칙 항목에 표시된 고시 클릭 후 좌측상단별표/서식 클릭(적하목록 관련 양식 수록) → 별지 제9호 서식 다운로드

08. 적하목록정정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무엇이 있나요?

A. 적하목록정정 과태료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사항	벌칙						
	1구간		2구간		3구간		
◈ 적하목록 관련	MRN기준 MR		205 MRN 151~3	 기준	30만원 MRN기준 300건 초과		
- BL추가 -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오류 BL	부과배 수	오류 BL	부과배 수	오류 BL	부과배 수	
- 정정기한 경과	1~10	1배	1~10	1배	1~10	1배	
- 과적단속 결과 중량상이로 통보된 경우	11~50	2배	11~50	2배	11~50	2배	
	50초과	3배	50초과	3배	50초과	3배	

- ① 1단계: 1년간 행위자별 위반한 적하목록 단위(MRN)를 기준으로 구간 결정
- ② 2단계: 해당 적발된 적하목록에서 위반된 B/L 건수를 기준으로 배수 산정
- ③ 3단계: 과태료 금액 = 구간금액 × 배수
- (사례) 1년간 적하목록(MRN) 위반이 30번째로 해당 적하목록에서 위반된 BL건수가 5건 → 과태료 산정: 10만원(1구간) X 1(1배수) = 10만원

09. 과태료 부과대상 중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적하목록 신고품명과 현품이 명백히 서로 다르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신고품명에 대한 사후 전산심사를 통하여 명백한 품명오류 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010. 과태료 부과대상 중 정정신청 기한 경과는 어떤 경우인가요?

- A. 입항적하목록은 입항일로부터 60일 경과, 출항적하목록은 출항 후 90일이 경과한 후 적하목록을 정정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그밖에 수입화물은 하성결과이상보고서 제춬입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 적하목록을

정정한 때, 냉동화물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완료하고 다음날까지 적하목록 정정을 하지 못했을 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B/L양수도와 B/L분할합병은 정정기간을 제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Q11. 적하목록상 화물구분(수입, 환적)을 정정하고 싶습니다.

A. 수하인, 통지처, 양륙항 등에 따라 정정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환적화물이 수입화물로 정정될 경우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되며 현품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수하인·통지처·양륙항	수입(I) → 환적(T)	환적(T) → 수입(I)
국 내	정정 불가(반송으로 진행)	정정 가능
외 국	정정 가능	정정 가능(국내로 정정 시)

Q12. 적하목록 제출 이후 공휴일에 하선전 긴급 양하 건이 있어 BL을 추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휴일이라도 하선전에 BL추가 정정신청서를 세관에 전산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전에 BL추가 정정신청을 전송했다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013. 적하목록 수하인의 사업자번호 정정은 가능한가요?

A. 사업자번호는 정정대상이 아니며 정정할 수 없습니다.

Q14. 입항적하목록의 중량 정정 시 Master BL과 House BL 중 어느 BL을 먼저 정정해야 하나요?

A. House BL 중량을 정정하면 Master BL 중량은 자동 정정됩니다.

Q15. 적하목록 중량이 잘못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입이상보고를 하였습니다. 적하목록을 정정해야 하나요?

A. 적하목록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세운송이나 수입신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16. 부산세관에 입항적하목록을 제출하면서 장치예정장소(=배정장소)를인천세관 관할 보세구역을 기재하였습니다. 정정해야 하나요?

A. 정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선신고만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017. 화주가 수출이행내역 조회 시 보여지는 출항일자와 실제 출항일자가 다르다고 합니다. 정정이 가능한가요?

A. 우선 선박 입출항을 관리하는 감시과에 실제 출항일로 출항보고를 정정을 하고, 통관 지원과에 적하목록 운항정보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018. 출항적하목록이 최종마감 되었는데 승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A. 적하목록 중 제출기한내 미제출한 건이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O19. 출항적하목록 1차 마감 후 선박이 변경되어 취하해야 합니다.

A. 1차 마감 후 취하는 불가합니다. 최종 마감상태 승인 이후 취하하시면 됩니다.

O20. 출항적하목록 BL타입 변경을 위해 Master BL을 삭제할 경우 House BL은 어떻게 삭제하나요?

A. Master BL내역을 삭제하면 House BL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021. 출항적하목록의 수출신고번호가 바뀌어서(Cross) 잘못 제출되었습니다.

A. 잘못 제출된 BL상의 수출신고번호를 각각 삭제하고 맞는 번호로 추가하면 됩니다.

O22. 출항적하목록의 UCR번호가 무엇인가요?

A. 수출업체가 개별화물에 대해 부여하는 개별식별부호입니다.

O23. 출항적하목록 취하 후 동일 MRN사용이 가능한가요?

A. 사용 가능합니다.

024. 출항적하목록 최종 마감 이후 자동승인은 언제 되나요?

A. 출항일 다음날 24시에 전산에서 자동승인 처리됩니다.

O25. 분할선적 차수는 몇 차까지 가능한가요?

A. 9차까지 가능하며 9차 이후에는 1차부터 다시 기재하시면 됩니다.

026. 출항적하목록 마감을 취소하면 어떤 상태로 변경되나요?

A. 최종 마감상태에서 예정 상태로 변경되며 추가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027. 수출신고 2건. BL 2건으로 동시포장 신고가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동일 BL내에서만 동시포장신고가 가능합니다.

Q28. 17년도 MRN으로 출항적하목록 제출하고 18년도 MRN으로 출항보고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A. 출항보고와 적하목록의 MRN은 반드시 일치시켜야 합니다. 기존 MRN취하 후 다시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029. 환적화물은 입항 후 며칠 이내 출항해야 하나요?

A. 기한은 없으나 30일이내에 출항하지 않으면 미선적 건으로 관리합니다.

Q30. 환적화물의 경우 입항적하목록이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적하목록 제출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 않습니다. 입항 화물관리번호가 존재하지 않아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하여도 누락됩니다.

Q31. 입항 시 BL타입을 'S'로 제출한 환적화물을 출항 시 BL타입을 'C'로 제출할 수 있나요?

A. 제출 가능합니다. BI 타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032. 수출신고번호가 없는 화물은 출항적하목록 제출 시 어떻게 하나요?

A. 수출신고 관련번호에 NCV 기재하시면 됩니다.

033. 어느 포워더가 수출신고번호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A. 세관 적하목록 담당자 또는 관세청 고객상담센터(1544-1285)로 연락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Ⅲ. 하선신고

01. 해상수입화물을 하선할 수 있는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A. - 컨테이너화물 : 부두 내 또는 부두 밖 CY(CFS포함)

- 냉동컨테이너화물 : 부두 내 또는 부두 밖 CY가 원칙이나 화주가 냉동창고 입고를 원하는 경우 냉동창고
- 산물(벌크) : 부두 내 보세구역

- 액체, 분말 등의 형태로 본선에서 탱크, 사이로 등 특수저장시설로 직송되는 물품 : 해당 저장 시설을 갖춘 보세구역

O2. 하선신고는 누가 하나요?

A. 물품을 적재하여 양륙할 화물이 있는 모든 선사가 각자 합니다.

03. 하선신고 후 하선장소를 정정하고 싶습니다.

A. 하서시고 후 입항반입전까지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입항반입된 경우는 하서 장소 정정이 불가능하므로 보세운송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4. 포워더도 하선장소를 정정할 수 있나요?

A. 하선은 Master BI.다위로 선사가 신고하기 때문에 포워더는 정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선사를 통하여 정정 하시기 바랍니다.

O5. 적하목록 장치예정장소(=배정장소)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A. 적하목록 장치예정장소(=배정장소)는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정할 필요가 없습 니다. 다만, 하선신고서에는 정확하게 하선장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06. 즉시검사 대상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었습니다. 하선신고한 하선장소로 물품을 반입 하면 되나요?

A.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는 경우 화물정보분석과에서 하선장소를 지정장치장으로 직권 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선장소를 확인 하신 후 지정장소로 화물을 반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07. 검색기검사 대상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었습니다. 하선신고한 하선장소로 물품을 반입하면 되나요?

A. 예. 하선신고한 하선장소로 물품을 반입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검색기 검사는 운송인이 하선장소에서 검색기센터로 이송하여 검사를 받은 후 이상이 없으면 하선장소로 재반입합니다.

Q8. 하선장소 반입기간 중간에 공휴일이 있으면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A. 반입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공휴일의 다음날이 반입기간입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 아니면 중간 공휴일은 반입기간에 산입됩니다.

(예) 컨테이너화물 반입기간 3일 수요일 입항 → 목, 금, 토, 일, 월요일까지 반입의무기간 목요일 입항 → 금, 토, 일, 월까지 반입의무기간 금요일 입항 → 토, 일, 월 까지 반입의무기가

09. 수입화물진행정보에 하선신고 정정승인(삭제)으로 보여집니다.

A. 하선신고 삭제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Q10. 어느 시점부터 하선장소·하역장소은 정정할 수 있나요?

A. 하선신고수리 후 정정이 가능합니다.

011. 하선신고를 하였으나 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A. 하선신고를 누락한 BL이 존재하거나, 하선장소 기재오류가 있으면 수리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하선신고는 전산심사로 자동수리 처리됩니다.

Q12. 하선신고수리 후 BL번호를 정정하였습니다. 입항반입 신고 때도 BL번호를 정정해야 하나요?

A. 정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Q13. 수입선박을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받아 통관하는 경우 하선신고(하선코드 : GD)를 어떻게 하나요?

A. 하선장소에 보세구역외장치허가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014. 하선신고 수리 후 Master BL을 추가한 경우 하선신고도 추가해야 하나요?

A. 추가 신고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하선신고는 Master BL단위로 하기 때문에 포워더에서 House BL을 추가하는 경우는 관련 선사에 하선신고 대상여부를 무의하시기 바랍니다.

Ⅳ. 관리대상화물

Q1. 수입화물진행정보에 관리대상화물 선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A. 하선신고 수리전에는 관리대상화물 선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O2. 수입화물진행정보에 관리대상지정여부(Y)는 언제 해제되나요?

A. 화물정보분석과에서 검사결과를 이상없음으로 등록하면 자동해제 됩니다. 다만, 검사결과 이상이 있으면 지정여부 표시는 없어지지 않고 Y(검사완료)형식으로 표시됩니다

O3. 수입화물진행정보에 투시해제는 어떤 상태인가요?

A. X-RAY검사 후 이상이 없어 관리대상화물 지정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04. 환적화물로 신고하였는데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었습니다.

A. 화적화물도 우범성이 의심될 경우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될 수 있습니다.

05.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관리대상화물 지정사유는 비공개입니다.

06. 관리대상화물은 컨테이너 단위로 지정하나요?

A. 아닙니다. BL단위로 지정합니다.

07. 관리대상화물 검사결과 등록은 완료되었으나 보세운송신고가 안됩니다.

A. 보세운송신고 시 승인신청 대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Q8.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어 검색기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용이 발생하나요?

A. 터미널 CY에서 검색기센터까지 운송비용이 발생하며 화주가 부담합니다.

V. 입항전보세운송신고

01. 하선신고 수리된 상태로 입항전보세운송이 가능한가요?

A. 하선신고를 삭제 후 입항전보세운송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보세운송출발지, 하선장소, 선박계선장소가 일치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O2. 1 Master, 복수 House건으로 일부 House건만 입항전보세운송이 가능한가요?

A. 일부 Hosuse건만 입항전보세운송신고는 안됩니다. 참고로 하선신고는 Master단위 로 하기 때문입니다.

Q3. 입항전보세운송건의 하선신고를 「IT+03046000」로 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참고로 하선장소가 터미널은 「TT+터미널부호」, 재래부두는 「TT+보세운송신고번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04. 입항전보세운송신고 시 출발지를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A. 보세운송 출발지는 정정할 수 없습니다. 보세운송 취하 후 다시 보세운송신고 하여야 합니다.

VI. BL분할 합병 및 비가공증명서

O1. 'BL분할(화물관리번호분할)' 이란 무엇인가요?

A. B/L분할이란 B/L자체를 새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건의 B/L에 부여되어 있는 하나의 화물관리번호에 별도의 HSN번호로서 새로운 화물관리번호만을 추가시키는 것으로서 한 건 B/L의 물품이 나뉘어서 보세운송하거나 일부 반송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업무입니다.

Q2. 수입물품을 양도하게 되어 BL분할을 신청할 때 수하인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BL분할은 동일한 BL을 단순히 HSN만 추가하여 보세운송 및 통관이 가능하도록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분할되더라도 BL번호는 동일하므로 분할 전후의 수하인이 달라질수 없습니다. 만일 BL 양수도 계약에 따라 양도가 되었다면 양수도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3. 현재 선박이 입항하여 하역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 보세창고에 미반입 상태이나 긴급하여 BL분할로 통관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BL분할은 화물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전산으로 BL분할 신청시 자동으로 장치된 장소에 분할된 내역이 반입이 되기 때문에 보세구역에 반입한 이후에 BL분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04. BL분할을 했는데 중량. 수량이 잘못 되었습니다.

A. 반출·반입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B/L분할 취소 전송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다시 정확한 중량·수량을 입력하여 B/L분할 신청을 하면 되고, B/L분할된 물품이 이미 반출까지 된 상태라면 중량·수량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5. Master BL건을 분할 하였는데 최초 화물관리번호 물품이 보세운송신고가 안됩니다.

- A. 수입통과이나 반송신고는 BL분할 후 남아있는 기존의 회물관리번호로 처리가 가능합 니다. 하지만 보세운송신고는 House BL단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잔여품을 보 세우송하고자 할 경우 잔여품 전량을 다시 새로우 HSN으로 분할하여 보세우송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 O6. 1개 Master BL에 1개 House BL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HOUSE BL 일부가 화주가 바뀌어 BI 분할하려고 합니다. BI 분할이 가능한지? BI 분할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BL분할은 동일 화주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BL분할로 처리할 수 없으며, 변경전의 BL은 정정을 하고 화주가 바뀌는 건은 BL 추가(신규 BL생성)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O7. 수입신고 물품 중 일부가 통관보류되어 BL분할로 통관 하려고 합니다. 통관보류된 물 품(반송예정)의 납부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도 BL분할이 가능한가요?
 - A. 징수금액 최저한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으나, 수입신고 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는 분할된 물품이 징수 금액이 1만원 미만이라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08. 비가공증명서의 발급 요건과 신청 자격을 알고 싶습니다.

A. 발급 요건은 하역, 재선적, 유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그 밖에 정상상태를 유지 하기 위한 작업 등을 제외한 추가적인 가공을 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된 경우입니다. 화적화물은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선사 또는 포워더, BWT화물은 화주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09. 환적화물 비가공증명서 신청 시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A.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비가공 증명 신청서(별지 제5호 A서식) 1부.
 - ②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별지 제5호 B서식) 2부.
 - ③ 일시장치 확인서* 1부.
 - * 보세구역운영인(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발행하며, 국내 반입되어 출항까지 장치된 장소마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입출항 BI사본
 - ⑤ 수입인지(400원)

- ⑥ 환적신고서(컨테이너 적출입 작업을 한 경우에 한함)
- ※ 비가공 증명 신청서 양식은 관세법령정보센터 접속(http://unipass.customs.go.kt/clip)
 - → 환적회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검색 → 「별표/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Q10. BWT화물도 비가공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예.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반송신고 후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① 비가공 증명 신청서(별지 제31호 A서식) 1부.
- ②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별지 제31호 B서식) 2부.
- ③ 일시장치 확인서* 1부.
 - * 보세구역운영인(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발행하며. 국내 반입되어 출항까지 장치된 장소마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입출항 Bl사본
- ⑤ 수입인지(400원)
- ※ 비가공 증명 신청서 양식은 관세법령정보센터 접속(http://unipass.customs.go.kt/clip)
 -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검색 → 「별표/서식」→ 별지 제31호 서식

₩. 전산신고 및 오류통보

Q1. 수출신고한 공컨테이너의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하니 선적 건이라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 A. 공컨테이너는 수출신고수리와 동시에 자동 선적 처리됩니다. 따라서 수출과에 요청하여 수출신고한 공컨네이너의 자동 선적 내역을 삭제한 후 BL타입 'E'(공컨테이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Q2. 하선결과이상보고 전송 시「상이내역부호가 CND(컨테이너번호가 다름)이면 이미 반 입된 컨테이너번호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A. 컨테이너 입항반입신고를 삭제한 후 하선결과이상보고를 전송하시면 됩니다.

03. 환적화물로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하니 환적화물이 아니라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 A. 입항적하목록 제출 시 수입화물(I)로 제출된 건입니다. 반송화물로 진행하거나 입항 적하목록상의 수입화물을 환적화물(T)로 정정하여야 합니다.
- 04. 하선신고 시「하역회사부호를 바르게 입력하십시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A. 하역회사부호 자리수(8자리)가 틀리거나, 사용하지 않는 하역회사부호를 입력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 05. 하선신고 시「입항전 수입신고 반입예정지와 하선장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A. 관세사에 연락하여 수입신고서의 반입예정장소를 하선장소로 정정하면 됩니다.
- O6. 하선신고 시「하선물품구분이 ID. IT가 아닌 경우 보세구역외장치는 허용되지 않습니 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A. 하선장소 기재 란에 보세구역외장치허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재전송하시기 바랍 니다.
- 07. 입한전보세우송신고 시「보세우송 출발지와 하선장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A. 하선신고 삭제 후 입항전보세우송신고를 진행하고 다시 하선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O8. 하선기간 연장 신청 시「담당세관/과 아니므로 수신된 전자문서를 처리할 수 없습니 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A.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하여 신고세관과 과 코드를 확인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산세관은 「030-10」입니다.
- **09**. 관리대상지정여부 : Y [검사완료-적하목록기재오류]로 확인되었습니다.
 - A. 세관에서 관리대상화물 검사결과 적하목록 신고내용과 다른 사항이 적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관리대상화물 검사부서 화물정보분석과에 적발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사항을 정정하시면 됩니다.
- O10. 수입화물진행정보 인쇄시 「에러코드:1020030013보고서를 로딩하면서 예외가 발생 하였습니다,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A. 도구〉 인터넷옵션〉 고급탭〉 [서버의인증서해제확인] 체크해제 하시기 바랍니다.
- 011. 입항적하목록 부분 재전송 후 「해당 건은 이미 보완 마감 되었습니다」 오류가 발생하 였습니다.
 - A. 세관에서 적하목록 심사완료 이후 정정하시면 됩니다.

- Q12. 적하목록 전송 시「사용정지된 화물주선업자부호입니다. 세관에 부호를 확인 하십시오」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A.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등록기간이 만료되어 부호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관합 세관장에게 등록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 Q13. 적하목록 전송 시「M BL 반입예정장소를 확인하십시오」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A. 기재된 반입예정장소(=배정장소) 부호가 만료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부호입니다.
- Q14. 입항적하목록 접수 전송 후 「본세관, 과는 적하목록문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세관, 과를 확인하십시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A.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하여 신고세관과 과 코드를 확인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산세관은 「030-33」입니다.
- 015. 적하목록 정정신청한 건이 세관에서 조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A. 전송시「접수」여부를 확인하시고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 미승인(심사대기), 승인, 기각 또는 서류제출상태로 통보됩니다.
- Q16. 적하목록 정정신청 시「정정전 내역(품명)이 적하목록과 상이합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A. 정정전 내역이 잘못 기재된 경우이거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상태입니다.
- Q17. 적하목록 정정신청 시「입항보고 제출건이므로 입항보고를 확인하십시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A. 운항정보는 감시부서에 입항보고를 정정하면 자동반영 됩니다.
- Q18. 적하목록 정정신청 시 「수입전 물품반출신고수리된 건으로 적하목록 정정 삭제를 할수 없습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A. 수입신고수리내역이 존재하는 화물은 세관에서 직권정정만 가능합니다.
- Q19. 적하목록 정정신청 시「해당 MRN은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적하목록 정정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A. 적하목록 심사완료 이후에 정정신청 가능합니다.

- O20. 적하목록 정정신청 시「이미 접수된 제출번호입니다. 새로운 제출번호를 사용 하십 시오 라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A. 이미 접수된 적하목록 정정신청한 건이 세관에 심사중에 있으며 중복제출은 불가합 니다
- 021. 출항적하목록 정정신청 시 「House BL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정. 삭제할 수출 신고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A. 출항적하목록 전송과정에서 BL이 누락된 경우입니다. House BL을 추가하여 진행하 시면 됩니다.
- O22. 인천세관(020)에 제출하여야 할 적하목록을 부산세관(030)으로 잘못 제출하였습니다.
 - A. 부산세과에 적하목록 취하시청서를 제출하고 인천세과으로 적하목록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023. 적하목록을 제출했는데 이번 항차로 입항/출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적하목록을 취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전산으로 적하목록 취하신청을 하고, 적하목록취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적하목록취하신청서는 관세법령정보센터 접속(http://unipass.customs.go.kt/clip)
 - →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검색 → 행정규칙 항목에 표시된 고시 클릭 후 좌측상단 「별표/서식」 클릭(적하목록 관련 양식 수록) → 별지제8호의 2서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024.**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했는데 처리상태가 '기각'입니다.
 - A. 기각 사유를 확인한 후 재신청하고 서류제출 대상이라면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 O25. 적하목록 정정신청 후 기각되어 다시 정정신청을 하는데 「기 심사된 자료입니다」라고 오류메시지가 뜹니다.
 - A. 기각 처리된 정정 신청 건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시고 새로운 일련번호로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O25. 적하목록 정정신청 후 기각되어 다시 정정신청을 하는데 「기 심사된 자료입니다」라고 오류메시지가 뜹니다.

A. 기각 처리된 정정 신청 건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시고 새로운 일련번호로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026. 적하목록 정정내역을 실수로 잘못 전송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세관 적하목록 정정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기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27. House BL 추가 신청을 전송했더니 기각되었습니다. 기각 사유가 「선사 BL타입을 확인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선사에 Master BL타입을 CONSOL로 변경하여 진행하시고, 컨테이너가 이미 입항반 입된 경우는 입항반입을 삭제 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Master BL의 타입이 SIMPLE인 경우로 House BL이 추가 될 수 없습니다.

Q28. 한 BL에 여러 대의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 중 일부만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었습니다. 하선장소가 지정장치장으로 되었는데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지 않은 컨테이너도 지정장치장으로 반입해야 하나요?

A. 관리대상화물 검사가 완료된 이후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된 컨테이너만 M BL에 남겨 두고,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지 않은 컨테이너는 별도로 M BL추가를 신청하여 진행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하선 후 M BL추가를 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Q29. 1개의 Master BL에 1개의 House BL로 신고를 했는데 화주가 BL을 나눠서 진행하고 싶다고 합니다.

- A. ① 컨테이너 한 대를 여러 BL로 나눠서 진행하는 경우 기존에 신고 된 BL의 중량·수량을 정정하고 나눠지는 BL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송·수하인이 변경되면 새로운 BL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② 컨테이너 단위로 BL을 나눠서 진행하는 경우 송·수하인이 동일한 경우라면 화물관리번호 분할로 진행 가능하며 세관 화물 반출입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송·수하인이 변경되면 ①과 동일합니다.

Q30.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전송했는데 체화된 물품이라고 전산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A. 체화 화물은 적하목록 정정신청이 전산으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세관에 정정신청서, 사유서, BL정정 전·후, INVOICE, PACKING LIST 등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31. 부두직통관으로 수입신고수리후 물품을 반출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창고에서 개장을 해보니 수입신고 내역과 중량·수량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적하목록정정이 가능한가요?

A. 수입신고수리 후 반출된 물품에 대한 적하목록정정을 하시려면 우선 수입신고(수입과)와 납세신고(심사정보과) 부서에 정정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고, 정정이 가능하다면 적하목록 정정 담당자에게 정정신청서, 사유서, BL정정 전·후, INVOICE, PACKING, 창고명의 입고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2. 입항반입 후 House BL을 추가하려 하는데 Master BL타입이 SIMPLE입니다. BL타입을 CONSOL로 변경 시 반입관련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A. House BL 추가 시 Master BL이 입항반입 상태면 자동으로 입항반입이 되지 않아 보세운송이나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입항반입을 삭제하고 BL타입 정정한 후 House BL 입항반입을 재신고 하여야 바랍니다.

033. 출항적하목록 제출 시 오류메시지를 통보받았습니다.

A. 품명 오류통보 BL을 제외한 그 밖의 오류통보 BL은 적하목록 제출에서 누락됩니다. 반드시 적하목록 전송프로그램에서 오류내역을 확인하고 적하목록 제출을 마감하여야 합니다.

Q34. 출항적하목록 제출 시「이미 선적된 수출신고내역입니다」라는 오류메시지가 확인되었습니다.

A. 다른 BL에 신고된 수출신고번호를 기재한 경우입니다. 수출신고번호를 다시 확인 후 관련 수출신고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Q35. 적하목록제출을 했는데 수출이행내역에 'N'으로 되어있습니다.

- A. 정상적으로 적하목록을 제출한 경우 수출이행내역은 적하목록 심사완료 다음날 반영 됩니다. 통상 출항마감 다음날부터 수출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BL이 누락된 경우는 BL추가 신청을 하시고, BL은 있으나 수출신고서상 중량·수량이 불일치 하는 경우는 정확한 중량·수량을 확인하고 BL을 정정하거나 수출신고내역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Q36. 수출신고내역과 중량·수량이 불일치로 수출이행내역에 'N' 으로 표기되어 있어 적하 목록 정정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았는데, 여전히 수출이행내역에 'N'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A. BL의 중량·수량만 정정하고 수출신고 관련번호의 중량·수량을 정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수출신고 관련번호의 중량·수량도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7. BL상 중량·수량이 정정되어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기각 사유는 「선적 포장개수 합은 통관 포장개수 합보다 클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 BL 중량·수량이 늘어나는 경우는 수출신고서의 중량·수량이 먼저 정정 되어야 합니다. 수출과에 수출신고서를 먼저 정정하고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Q38. House BL추가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기각 사유는 「House BL의 포장개수 합은 Master BL의 총 포장개수 합보다 클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선사에 요청하여 Master BL의 중량·수량을 먼저 정정하고 House BL을 추가하여 정정하면 됩니다.

Q39. 출항적하목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면허일자가 출항일자 이후 건입니다」 오류메시지를 받았습니다.

A. 수출물품을 수출신고수리전 내국물품 상태에서 선박에 무단적재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외국무역기에는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에는 통고 처분 대상입니다.

적하목록정정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안내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O40. 출항적하목록 BL번호는 어떻게 정정하나요?

- A. 정정할 수 없습니다. BL을 삭제한 후 BL을 추가하여 정정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출항적하목록은 입항적하목록과 달리 정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① BL번호 정정 ② 화물구분 정정(E↔R) ③ BL타입 정정(S↔C↔E)

Q41. 수출신고가 2건으로 수리됐는데 그 중 일부를 동시포장 하였습니다. 적하목록 제출 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수출신고번호를 넣고 동시포장 여부에는 'A'를 공통으로 기입한 다음 동시포장 개수를 넣고 선적포장 개수와 선적중량은 해당되는 수출신고필증의 포장개수와 중량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적하목록 포장개수는 (선적포장 개수의 총합 - 동시포장 개수)이며 중량은 총중량으로 기업하시면 됩니다.

(예) 적하목록 포장개수 9개(10(선적포장합)-1(동시포장개수)), 중량 900KG일 경우

수출신고 관련번호	동시포장 여부	동시포장 개수	선적포장 개수	선적중량 (KG)	분할선적 여부	분할선적 횟수
가XXX	А	1	3	300		
나XXX	А	1	7	600		

O42. 분할선적 시 수출신고 사항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A. 수출신고번호 입력 시 분할선적 여부에 'Y'를 표시한 후 실제 선적포장 개수와 선적 중량을 입력하고 분할선적 회수를 입력하면 됩니다.